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김기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05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08일
발 의 자: 김기덕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 경, 김영철,
김원태, 민병주, 박강산,
아이수루, 유정희, 이상훈,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우리나라 예술 관련 법령 체계는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중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021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는 예술계의 요구가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술인권리영
향평가 및 예술인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
조)

바.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사. 포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서울특
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

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③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2.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3.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술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술인권리영향평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3조(시장의 책무)	×	[규정단일 미영향]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한 규정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¹⁾ 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규정단일 미영향] 해당시안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어 규정 단독으로 발생시키는 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제5조(지원사업)	×	[기추진 사업]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관련 사업비용이 발생하나 기추진 사업 ²⁾ 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5	제6조(예술인권리영향평가)	○	[유사사례 활용 추계] 예술인권리영향평가 관련 비용이 발생하여 서울시 유사사례 ³⁾ 를 토대로 자체 추계함 ⇒ 총 262,000천원 소요 예상(연평균 52,400 소요예상)
6	제7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	[내부인력 활용] 예술인보호책임자 지정은 내부인력 ⁴⁾ 을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7	제9조(포상)	×	[재정소요 영향 미미] 시민대상 표창은 통상 부상없이 표창장 수여만 하므로, 해당 시안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 ⁵⁾ 은 자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그 외 규정은 별다른 재정소요 요소가 없을 것으로 보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노력의무규정 특성] 시장의 책무규정은 통상 선언적 조항(가령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조문 단독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제외함
- [기추진사업]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시예술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상담, 법률적 지원, 보호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어 기추진 사업으로 판단됨
- [유사사례 적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22~2024년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평균예산 : 52,400천원
- [상위법령 고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예술인보호관)제1항에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을 지정하고, 곧이어 제5항에 예술인보호책임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고려할 시 서울시의 예술인보호관도 내부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표창관련 재정소요 미미] 통상 시민대상 표창의 경우 부상(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참고)없이 표창장만 수여하기에 표창장 제작비(1인당 5,500원)정도의 소액만 소요(예외적으로 공무원 표창 시 일부 부상수여)되므로 서울시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예술인권리영향평가 관련 비용(안 제6조)

나. 전제

임의규정이나 서울시 차원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도입을 전제할 경우 관련 사업비용이 발생

- (영향평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권영향평가>⁶⁾ 52,400천원⁷⁾ 준용
⇒ 조사 주기 또한 해당 영향평가를 준용하여 매년을 가정함
- (발생기간) 2026년부터 비용 발생, 매년 소요, 추계기간(2026~2030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전제
- (미 고 려) 향후 실제 사업추진 형태(현재 구체적 정책 미수립)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라. 방법

- (자체추계) 서울시 유사사례 준용 및 각종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보고서) 등 활용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총 262,000천원(연평균 52,4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예술인 권리영향 평가 실시 비용(안 제6조)	52,400	52,400	52,400	52,400	52,400	262,000
	소계(a)	52,400	52,400	52,400	52,400	52,400	262,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52,400	52,400	52,400	52,400	52,400	262,000

주 : 서울시 유사사례(인권영향평가) 준용

- 6) [과업내용 유사성 고려] “예술인 권익”라는 측면에서 인권과 관련성이 높고 “영향평가”라는 측면에서 과업의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통상적인 실태조사 시장가격(용역비 등)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사업을 준용하였음
⇒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주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제3항에 따라 기관자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① 체크리스트 등 평가지표를 개발 및 ② 제도 도입 초기에 의한 평가결과 분석(환류) 등에 따른 용역비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실시 용역 과업지시서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제도 연구> 결과보고서
- 7) [최근 3년간 평균금액 준용] 2025년을 제외한 최근 3년간 인권영향평가 관련 예산이 매년 달라 평균적인 금액을 산출하여 준용하였으며, 2025년의 경우 서울시 관련부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권담당관) 문의결과 기존 용역을 통한 수행방식에서 직접수행으로 변경되어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년도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함

<최근 3년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서울특별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64,000	52,000	41,200

주 : 2025년을 제외한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인 52,400천원을 준용
자료 : 해당년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업설명서

4. 덧붙이는 의견

○ [추계액 성격] 예시적·제한적 금액

- 입법취지 및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해당 안은 선제적 입법⁸⁾이므로 구체적인 정책수단, 집행 계획 등이 정해진 바 없어 서울시 유사사례 및 각종 자료⁹⁾ 등을 토대로 재정분석과에서 정책 추진 형태를 임의로 가정하여 자체추계(정책 초기단계 대략적 규모 파악용)하였음

○ [추계액 활용유의] 대략적 규모파악용 자료로 활용권장

- 향후 집행기관에 의해 해당 정책이 보다 구체화 될 경우 사업의 형태, 운영방식, 규모, 대상 등 (다양한 지출결정요인)에 따라 소요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추계액은 다양한 사업 운영방식 중 하나의 예시로써 대략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예술인권리영향평가 관련 비용(안 제6조)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총 262,000천원**(연평균 52,400천원 × 5년)

나. 연평균 비용 = 52,400천원

=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실시 비용(인권영향평가 준용)

8) [예산마련 추가논의 필요]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 입법조치**이나,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추후 구체적인 정책수단 결정 및 이를 실현할 예산 마련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정책연구보고서 내용 고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2년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제도에 관해 연구(사업예산 30,000천원)를 진행한 바 있어 해당 연구보고서 내용을 일부 고려하였으나, 현재 국가 차원에서도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예술인 권리영향 평가 가이드라인 또한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은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단계일 가능성이 높아 향후 추진될 예술인 권리 영향평가와 크게 다를 수 있음

※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에 유선 문의결과 현재 예술인권리 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관련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므로 향후 서울시 차원의 제도운행을 추진할 경우 자체적으로 평가지표 개발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지표개발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